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26
----------	------

2024년 4월 25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4월 3일, 우형찬 의원(찬성자 12명)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다. 상정일자 :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4년 4월 25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우형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'19~23년 최근 5년간 전국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의 경우, 전국 대비 서울의 비율이 50%에 육박('19년 전국 393개동 중 194개동, '23년 전국 468개동 중 228개동) 하며,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비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('23년 228개동 중 207개동)
- 특히,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, 재난발생 요인 가운데 대규모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로 인해 화재발생 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곳으로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, 관리주체의 화재 및 대피 동선 등의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관한 조항 신설

나. 주요골자

- (1)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시, 대피 등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현행 제11조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토록 하던 것에 추가적으로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토록 명시하려는 것임.

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)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제11조(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초고층 건축물이란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 “법”)제2조제1호1)에 “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”로 정의하고 있으며,
-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법 제2조제2호2)에 “층수가 11층 이상

1) “초고층 건축물”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(「건축법」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.

2) 2. “지하연계 복합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.
 가.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
 나. 건축물 안에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, 같은 항 제7호에 따른

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면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(慰樂)시설 중 유원시설업(遊園施設業)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”로 정의하고 있음.

-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은 총 232개동으로 강남구 무역회관(트레이타워) 등 초고층 건축물은 23개동, 강남구 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등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209개동임([표] 참조).

[표]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('24.4. 기준)

(단위 : 개동)

구 분	계	종로구	중구	용산구	성동구	광진구	동대문	성북구	강북구	노원구	은평구	서대문	마포구	양천구	강서구	구로구	영등포	동작구	관악구	서초구	강남구	송파구	강동구
계	232	15	40	11	2	6	8	2	3	3	3	6	15	1	3	3	21	1	4	16	42	21	6
초고층	15	0	0	1	0	3	1	0	0	0	0	0	0	1	0	0	2	0	0	0	7	0	0
초고층+지하연계	8	0	0	0	0	0	1	0	0	0	0	0	0	0	0	1	3	0	0	0	2	1	0
지하연계	209	15	40	10	2	3	6	2	3	3	3	6	15	0	3	2	16	1	4	16	33	20	6

※ 중랑구, 도봉구, 금천구 :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없음

- 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건축물 내 공간의 규모 및 분포, 지상으로부터의 수직거리 또는 지하공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피난이 곤란하거나 피난에 장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음.

판매시설,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,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,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,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(慰樂)시설 중 유원시설업(遊園施設業)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

-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피 동선 안내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,
- 동 개정안은 신속하며 안전한 대피 동선 안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노력의무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시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, 대피 동선 안내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의 만일의 재난 발생 시 보다 원활한 시민 대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참고로, 시는 현행 조례 제5조의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제11조('23.3.7. 신설)에 따른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대피 및 피난 유도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“(가칭)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초고층 등의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” 연구용역('24.5.~12.)을 추진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며,
- 주요 과업내용은 ‘재난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개선방안 마련’, ‘초고층 건축물등의 피해경감계획서 표준(안) 업무 매뉴얼’, ‘초고층 건축물등 디지털 피난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(안) 마련’임.

◆ **학술용역 추진계획**

□ **개요**

- 용역명: 「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초고층등의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」 연구용역
- 용역기간: 계약일로부터 8개월('24. 5. ~ 12.)
- 용역대상: 서울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(232개동)
- 소요예산: 금 100,000천원 ※ '24년 예산 기편성 완료

□ **주요 과업내용**

- 재난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개선방안 마련
 - 기존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관리계획 분석
 -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관리(샘플링) 실태 조사·분석
 -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개선 방안에 관한사항 분석
 -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위한 개선방안
- 초고층 건축물등의 피해경감계획서 표준(안) 업무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
 - 초고층 건축물등의 피해경감계획서 표준(안)의 업무 매뉴얼 분석
 - 피해경감계획서 표준 업무 매뉴얼 재정비 및 개선방안
- 초고층 건축물등 디지털 피난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(안) 마련
 - 초고층 건축물 등의 피난안전(샘플링) 실태조사
 - 실태조사 기반 재실자 피난안전성 분석
 - 재실자 피난확보를 위한 스마트기술 및 시스템 분석
 - 스마트기술기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

□ **향후 일정**

-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 : '24.5월
- 1차 중간보고회 개최 : '24.8월
- 2차 중간보고회 개최 : '24.10월
- 최종보고회 개최 : '24.12월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형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2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발 의 자: 우형찬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성준, 박강산, 박수빈,
박승진, 박유진, 송도호,
송재혁, 아이수루, 이소라,
이용균, 임규호, 전병주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'19~23년 최근 5년간 전국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의 경우, 전국 대비 서울의 비율이 50%에 육박('19년 전국 393개동 중 194개동, '23년 전국 468개동 중 228개동) 하며,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비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('23년 228개동 중 207개동)
- 특히,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, 재난발생 요인 가운데 대규모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로 인해 화재발생 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곳으로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, 관리주체의 화재 및 대피 동선 등의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관한 조항 신설

2. 주요내용

- 가.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시, 대피 등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)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제11조(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(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)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11조	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 개선	100,000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추계분석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2024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 개선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'24.1.~12.
- 사업수행주체 : 서울특별시
- 추진방법 :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 개선 용역
- 사업의 주요내용 : 재난관리계획 수립·시행 의무화